

부산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570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57046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7 선고 2022재가합19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3123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1. A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김능철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D 대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호진

변론 종결 2024. 5. 2.

판결 선고 2024. 7. 4.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3123 판결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7. 선고 2022재가합19 판결

주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재 심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003,975,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20) 내지 (2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재심원고) C(이하 '원고 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367,82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3), (4),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5억 2,100만 원, 원고 C에게 1억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10. 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거짓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거짓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거짓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거짓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92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64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사가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면서 불기소이유통지서의 '피의사실'란에 위증의 피의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이 검사가 위증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② 서울성동경찰서의 사법경찰관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소속 검사가 위증 혐의로 E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나 자료가 없는 점, ③ 검사가 참고인중지의 불기소결정을 한 E에 대한 사기 등 혐의 사건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의견서의 '수사한 결과'란에 'E이 2008. 3. 23. 및 2008. 5. 2.경 등 몇 차례에 걸쳐 F를 믿고 거래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E은 피고 종중의 상무였을 뿐이고 위 일시도 원고들이 F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일시(2006. 3. 28.부터 2007. 4. 19.까지) 이후일 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존재 등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E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상민

판사박진웅

판사최희영

별지